

가상병원 운영 규정(4-2-14)

신설 : 2015.11.26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가상병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가상병원은 학생 및 의료인들에게 임상술기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임상술기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사회 건강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.

제3조(업무) 가상병원은 제2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임상술기와 관련된 교육과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
2. 외부 관련 기관의 위탁 교육
3.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
4. 간행물 발간
5. 국제학술교류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4조(조직) 가상병원에 운영위원회와 운영지원팀을 둔다.

제5조(임원) ① 가상병원의 대표로 센터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가상병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을 두며,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유고시 센터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6조 (기능) ① 가상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상병원 운영위원회 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1. 가상병원의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
 2. 가상병원의 예산 및 결산
 3. 가상병원의 규정 제정 및 개정 심의
 4. 기타 가상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가상병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본교의 지원금
2. 외부기관의 지원금
3. 기타 수입

제10조(회계연도) 가상병원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1조(예산 및 결산) 가상병원의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예산편성 및 결산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.

제12조(감사) 가상병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한다.

제 5 장 규정 개정과 준용

제13조(규정 개정) 가상병원의 운영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 제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.

제14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